

제281(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년 6월 19일 (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6. 19(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심홍섭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6월 5일

○ 회부일자 : 2009년 6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 6.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심홍섭 의원)

가. 제안이유

○ 국제화 촉진과 도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시행중에 있는 조례의 정
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제민간기구를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함(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2.(생략) 3. <u>외교통상부산하 국제민간단체</u> <u>로서의 법적지위 획득</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u>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u> <u>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u>

관 계 법 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